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 4. 26 선고 2022가단23815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4. 26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6. 24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5,744,19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5,744,1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김나경

별지